#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31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허성무·김문수·최민희

문정복 • 박민규 • 손명수

이수진 · 김동아 · 김교흥

이광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축·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관리청으로하여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 등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가격에 비례하여 점용료·사용료를 산출하고 있어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문제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 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친환경에너 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전단). 법률 제 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하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부터 적용한
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의 징수) ① -----점용 · 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 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 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 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 -----장수하되, 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 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 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 사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대통 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한액
으로 한다
1. ~ 15. (현행과 같음)

- 1. ~ 15. (생략)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